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가. 의안번호 : 제655호

나. 제안자 : 이병도 의원 외 14명

다. 제안일 : 2023년 3월 29일

라. 회부일 : 2023년 4월 3일

### 2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청년 실태조사 및 예산지원 근거, 시민 공개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 제11조(청년 실태조사 등),

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(청년 실태조사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3.4.6. ~ 4.10.) 결과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미래청년기획단) : 원안 가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조례안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서울시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,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와 조사 결과 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 제1항은 시장의 청년 실태조사 수행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은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, 같은 조 제3항은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7조의2 (청년 실태조사 등)</b></p> <p>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.</p>

### 나. 청년 실태조사 현황

- 서울시는 2020년 청년청(현 미래청년기획단)에서 ‘청년실태조사’를 최초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년 ‘서울청년패널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음

- ‘청년실태조사(2020)’ 및 ‘1차 서울청년패널조사(2021)’는 서울시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었으며, 이후 서울연구원 정기수탁과제 자체연구화에 따라 ‘서울청년패널조사’가 서울연구원 정기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임

○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연구원과 <서울청년패널조사 활용 정책간담회>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·분석하고, 전문가와 함께 청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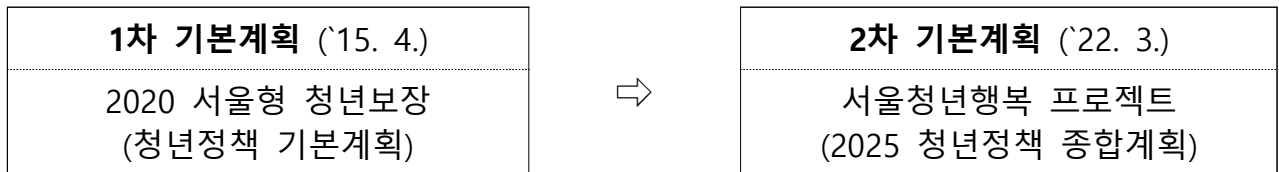
**□ 서울청년패널조사<sup>1)</sup>**

- 추진 근거: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8조 (청년정책연구 등)
- 조사 개요: 서울시 거주 만 15~34세 이하 청년 5,000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조사
- 조사 내용: 청년 삶 전반에 관한 사항(11개 영역, 216개 항목)
- 조사 현황: '21년 1차, '22년 2차 패널조사 완료 / '23년 3차 패널조사 예정
- 추진 기관: 서울연구원

**□ 서울청년패널조사 활용 정책간담회**

- 추진 내용: 서울연구원과 패널결과를 공유, 분야별 청년정책 도입방안 발굴 및 논의
  - ※ '23년 4회 개최 계획 : (1차)일반특성·교육훈련, (2차)일자리·창업, (3차)주거, (4차)금융
  - ※ 3월 1차 간담회 개최, 4월 2차 일자리·창업 분야 간담회 예정
- 참석 대상: 서울연구원 연구진, 관련 분야 전문가, 미래청년기획단

**<서울시 청년 기본계획 수립 현황>**



**다. 조례 내용 검토**

(1) 청년 실태조사 의무 (안 제7조의2 제1항)

○ 관련 법령인 「청년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은 “정부”와 “관계 중앙

1) **패널조사** : 조사대상을 고정, 동일 조사대상에 대하여 복수의 시점에 동일 질문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방법

행정기관의 장”에게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시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음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실태조사를 강행규정(~하여야 한다)으로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청년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, 새로운 정책 발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됨

### 「청년기본법」

제11조(청년 실태조사 등)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

제8조(청년 실태조사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(각 호 내용 생략)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필요적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실시 주기는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조사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. 다만 실태조사와 기본·시행계획 수립 간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의 적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행 주기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<sup>2)</sup>

## (2) 실태조사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(안 제7조의2 제2항)

2) 국무조정실은 「청년기본법」과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을 근거로 2년마다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.

[청년의 삶 실태조사] : '22년 첫 번째 실태조사 완료 후 '23년 3월 결과 발표.

(국무조정실 보도자료 : <https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556083#goList>)

- 안 제7조의2 제2항은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과 비용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것으로 보임

### (3)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 (안 제7조의2 제3항)

- 안 제7조의2 제3항의 전단에는 시장의 실태조사결과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,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 근거를 밝혀 정책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
- 다만 결과 공개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방안, 실태조사의 추가 활용방안 등의 후속 조치가 동반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

### (4)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의무 (안 제7조의2 제3항)

- 안 제7조의2 제3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여 실효적인 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해되며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
- 실태조사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법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‘기본계획의 내용’에 청년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
### (5) 추가 검토사항

- **현행 조례 제8조(청년정책연구 등)**에서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<sup>3)</sup>, 이번 조례개정으로 “실태조사”와 “기초조사”가 모두 조례에 포함되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
- **관련 법령과 다른 시·도의 「청년 기본 조례」**를 살펴보면 “실태조사”와 “기초조사”를 동시에 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, 법령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명확성 측면에서 향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**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**

**제8조 (청년 정책연구 등)**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**매년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**

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**< 관련 법령 및 타 시도조례 >**

관련 조례	주요 내용
청년기본법	제11조(청년 실태조사 등) ① 정부는 ~ (중략) ~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에 대한 <b>실태를 조사하여 공표</b> 하여야 한다. 제12조(청년정책 연구사업) ① 국무총리는 ~ (중략) ~ 청년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	제9조(청년정책연구 등)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에 한 차례 이상 <b>실태조사</b>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	제10조(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)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<b>실태조사를 실시</b> 할 수 있다.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	제7조(청년정책 연구 등)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의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 등

3) 서울시에서는 동 조항을 근거로 기존 '서울청년실태조사'와 '서울청년패널조사'를 추진

관련 조례	주요 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</p>	<p>에 대한 연구사업과 <b>실태조사</b>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청년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전반에 대한 <b>실태조사</b>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는 「통계법」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연구사업) ① 도지사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·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</p>

## 라. 종합 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실재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책 계획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, 정책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,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,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유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
- 실태조사로 청년 삶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지원 근거와 필요성, 정당성을 밝힐 수 있어 청년 정책 실행력과 추진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, 또한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견하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
- 다만, “실태조사”와 “기초조사”에 대해 현행 조례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정 간 혼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와 정비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실태조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 관성적 조사 시행과 형식적 결과 공개로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